

항공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(제97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처분의 내용

- 1) 이 별표에서 "자격등증명 취소"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, 자격증명의 한정, 계기비행증명, 조종교육증명 및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.
- 2) 이 별표에서 "효력정지"란 일정기간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.

나. 처분기간의 산정

- 1) 하나의 행위로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중 무거운 처분의 기준에 따르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한다.
- 2) 하나의 비행 편에서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중 무거운 처분의 기준에 따르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한다.
- 3) 같은 위반행위가 연속하여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1회의 위반행위로 보아 처분하되,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한다. 다만, 위반사실을 인지하고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위반횟수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.
- 4) 위반행위가 기장을 보조하는 운항승무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기장에 대한 처분 외에 그 운항승무원에 대해서도 처분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운항승무원에 대한 처분은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여 처분할 수 있다.
- 5)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최근 2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6) 5)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[5)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]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7)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으나, 법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제4항에 따라 처분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.
- 8) 3)에서 "같은 위반행위"란 제2호의 같은 목(세부유형이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유형)의 위반행위를 말하며, 제2호가목29)·31)·35)·36)의 위반행위는 별표 35의 세부유형이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.

다. 처분의 조정

- 1)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 및 제2호에

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여 처분할 수 있다.

- 가) 항공안전에 대한 위협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
  - 나) 행위자가 항공안전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  
(경미한 위반행위에 한하며,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)
  - 다) 위반행위를 한 항공종사자가 과거 법을 위반한 이력이 없는 경우(경미한 위반행위에 한한다)
  - 라) 「공항시설법」 제2조제7호·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미비·장애, 항공기에 사용한 부품의 결함 및 항공기 정비 등을 위해 사용한 장비 등의 오작동 등 외부적인 상황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
  - 마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려 처분할 수 있다.
- 가)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
  - 나) 다른 항공기의 운항안전 또는 공중(公衆)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
  - 다) 위반직후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협을 증대시킨 경우
  - 라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 2. 개별 기준

### 가. 자격증명 등

| 위반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거 법조문        | 처분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등을 받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43조제1항 제1호 | 자격증명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)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<br>가) 벌금 200만원 이상<br>나) 벌금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<br>다) 벌금 100만원 미만                  | 법 제43조제1항 제2호 | 자격증명 취소<br>효력정지 50일<br>효력정지 30일         |
| 3)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 사고를 일으켜 다음 각 목의 인명 피해를 발생한 경우<br>가)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<br>나)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<br>다) 중상자 외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| 법 제43조제1항 제3호 | 자격증명 취소<br>효력 정지 90일 이상<br>효력 정지 30일 이상 |
| 4)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43조제1항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사고를 일으켜 다음 각 목의 재산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</p> <p>가)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</p> <p>나)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다)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미만인 경우</p> | 제3호             | <p>자격등증명 취소</p> <p>효력 정지 90일 이상</p> <p>효력 정지 30일 이상</p>                     |
| 5)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 등을 확인하는 항공종사자가 제70조에 따른 방법으로 감항성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43조제1항 제4호   | <p>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</p> <p>2차 위반: 효력 정지 120일</p> <p>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년</p>  |
| 6)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43조제1항 제5호   | <p>1차 위반: 효력 정지 150일</p> <p>2차 위반: 효력 정지 1년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)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한정된 종류,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·경량항공기, 한정된 정비분야나 한정된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, 수행방식 및 항공교통관제 시설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43조제1항 제6호   | <p>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</p> <p>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</p> <p>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80일</p> |
| 8) 법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 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43조제1항 제6호의2 | 자격등증명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) 법 제3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알선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43조제1항 제6호의3 | 자격등증명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가)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 주는 행위</p> <p>나)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발리는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0)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 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않고 항공 업무(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포함한다. 이하 18), 19) 및 22)에서 같다)에 종사한 경우     | 법 제43조제1항 제7호   | 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<br>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<br>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50일 |
| 11)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 관제사가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43조제1항 제8호   | 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<br>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<br>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50일 |
| 12)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체적·정신적 상태의 저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43조제1항 제8호의2 | 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<br>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<br>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50일 |
| 13) 법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기 전에 항공업무를 수행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43조제1항 제8호의3 | 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<br>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<br>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50일 |
| 14)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기 비행증명을 받지 않고 계기비행 또는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비행을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43조제1항 제9호   | 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<br>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<br>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80일 |
| 15)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종 교육증명을 받지 않고 조종교육을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43조제1항 제10호  | 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<br>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<br>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80일 |
| 16)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 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지 않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43조제1항 제11호  | 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<br>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<br>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80일 |
| 17)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이 없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계기 비행·야간비행 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| 법 제43조제1항 제12호  | 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<br>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<br>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50일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8)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| 법 제43조제1항 제13호   | 가. 주류의 경우<br>1) 혈중알코올농도 0.02 % 이상 0.06 % 미만: 효력 정지 60일<br>2) 혈중알코올농도 0.06 % 이상 0.09 % 미만: 효력 정지 120일<br>3) 혈중알코올농도 0.09 % 이상: 자격증명 취소<br>나.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<br>1) 1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<br>2) 2차 위반: 효력 정지 120일<br>3) 3차 이상 위반: 자격증명 취소 |
| 19)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                 | 법 제43조제1항 제14호   | 가. 주류의 경우<br>1) 혈중알코올농도 0.02 % 이상 0.06 % 미만: 효력 정지 60일<br>2) 혈중알코올농도 0.06 % 이상 0.09 % 미만: 효력 정지 120일<br>3) 혈중알코올농도 0.09 % 이상: 자격증명 취소<br>나.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<br>1) 1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<br>2) 2차 위반: 효력 정지 120일<br>3) 3차 이상 위반: 자격증명 취소 |
| 20) 법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   | 법 제43조제1항제 15호   | 자격증명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1) 법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한 경우<br>가)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            | 법 제43조제1항 제15호의2 | 1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2차 위반: 효력 정지 120일<br>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8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나) 주기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<br>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<br>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9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2) 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준사고, 의무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 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경우<br>가)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경우<br>나)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 | 법 제43조제1항 제16호 | 1<br><br>1차 위반: 효력 정지 15일<br>2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<br>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75일<br>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<br>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<br>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5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3) 법 제62조제2항 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장이 다음 각 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<br>가)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완료 확인의 의무<br>나) 여객구조 등의 의무<br>다) 항공기 사고,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발생사실의 보고 의무 | 법 제43조제1항 제17호 | 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<br>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<br>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90일<br>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<br>2차 위반: 자격등증명 취소<br>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<br>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<br>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50일 |
| 24) 조종사가 법 제63조에 따른 운항자격의 인정 또는 심사를 받지 않고 운항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43조제1항 제18호 | 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<br>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<br>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5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5) 법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장이 운항관리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비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43조제1항 제19호 | 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<br>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<br>3차 위반: 자격등증명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6) 법 제66조를 위반하여 이륙·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43조제1항 제20호 | 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<br>2차 위반: 효력 정지 150일<br>3차 위반: 자격증명 취소      |
| 27) 법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행 규칙을 따르지 않고 비행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43조제1항 제21호 | 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<br>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<br>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80일 |
| 28) 법 제68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 또는 행위를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43조제1항 제22호 | 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<br>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<br>3차 위반: 효력 정지 1년      |
| 29) 법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항공기로 위험물을 운송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43조제1항 제23호 | 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<br>2차 위반: 효력 정지 90일<br>3차 위반: 자격증명 취소       |
| 30) 법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 업무를 수행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43조제1항 제24호 | 1차 위반: 효력 정지 10일<br>2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<br>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90일  |
| 31) 법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비행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43조제1항 제25호 | 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<br>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<br>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90일  |
| 32) 법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 비관제공역(非管制空域) 또는 주의공역(注意空域)에서 비행한 경우 | 법 제43조제1항 제26호 | 1차 위반: 효력정지 30일<br>2차 위반: 효력정지 60일<br>3차 이상 위반: 효력정지 150일    |
| 33) 법 제79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 통제공역에서 비행한 경우                 | 법 제43조제1항 제27호 | 1차 위반: 효력정지 30일<br>2차 위반: 효력정지 90일<br>3차 위반: 자격등증명 취소        |
| 34) 법 제8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지시하는 이동·이륙·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따르지 않은 경우      | 법 제43조제1항 제28호 | 1차 위반: 효력정지 30일<br>2차 위반: 효력정지 90일<br>3차 위반: 자격등증명 취소        |
| 35) 법 제90조제4항(법 제96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43조제1항      | 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<br>을 위반하여 운영기준을 준수하지<br>않고 비행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<br>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29호                | 2차 위반: 효력 정지 180일<br>3차 위반: 효력 정지 1년                        |
| 36) 법 제93조제7항 후단(법 제96조<br>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<br>한다)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또는<br>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를<br>수행한 경우         | 법 제43조제1항<br>제30호   | 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<br>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<br>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90일 |
| 37) 법 제10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경<br>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·부품의<br>정비사항을 확인하는 항공종사자<br>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<br>에 따라 확인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43조제1항<br>제30호의2 | 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<br>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<br>3차 위반: 효력 정지 90일    |
| 38) 자격증명등의 정지명령을 위반하<br>여 정지 기간에 항공업무에 종사<br>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43조제1항<br>제31호   | 자격등증명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# 나. 항공신체검사증명

| 위반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거 법 조문          | 처분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<br>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43조제3항<br>제1호 |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)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<br>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<br>준에 맞지 않게 되어 항공업무를<br>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<br>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43조제3항<br>제3호 | 효력정지 30일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) 법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정<br>된 항공업무(법 제46조제1항제1호<br>및 제3호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<br>을 포함한다. 이하 5), 6) 및 7)에서<br>같다)의 범위를 준수하지 않고 항<br>공업무를 한 경우 | 법 제43조제3항<br>제4호 | 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<br>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<br>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50일 |
| 4) 법 제41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명<br>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43조제3항<br>제5호 | 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<br>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<br>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50일 |

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5)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43조제3항제6호                | 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<br>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<br>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5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)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| 법 제43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| 가. 주류의 경우<br>1) 혈중알코올농도 0.02 % 이상 0.06 % 미만: 효력 정지 60일<br>2) 혈중알코올농도 0.06 % 이상 0.09 % 미만: 효력 정지 120일<br>3) 혈중알코올농도 0.09 % 이상: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<br>나.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<br>1) 1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<br>2) 2차 위반: 효력 정지 120일<br>3) 3차 이상 위반: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|
| 7)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    | 법 제43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| 가. 주류의 경우<br>1) 혈중알코올농도 0.02 % 이상 0.06 % 미만: 효력 정지 60일<br>2) 혈중알코올농도 0.06 % 이상 0.09 % 미만: 효력 정지 120일<br>3) 혈중알코올농도 0.09 % 이상: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<br>나.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<br>1) 1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<br>2) 2차 위반: 효력 정지 120일<br>3) 3차 이상 위반: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8) 법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| 법 제43조제1항 제1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| 1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<br>2차 위반: 효력 정지 120일<br>3차 이상 위반: 항공신체검사 증명 취소 |
| 9) 법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 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고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              | 법 제43조제3항 제7호                | 1차 위반: 효력 정지 10일<br>2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<br>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90일     |